



KiSTi

지식리포트

2013. 12. (No.37)

「학술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유수현 · 김완중 · 김혜선 · 최진원

■ 목 차 ■

요 약

1. 서론	1
(1) 공공정보 개념	1
(2) 공공정보의 가치	2
(3) 공공정보 개방 동향	4
2. 공공정보 개방 관련 국내외 법제도	7
(1) EU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지침	7
(2) 미국의 공공정보 공개 관련 법제도	8
(3)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10
3. 공공정보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13
(1) 검색 서비스와 저작권법	13
(2) 저자정보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법	14
(3) 로그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	18
(4) LOD 관련 법적 쟁점	19
(5) 공저자맴과 인격권	24
4. 결론	26
참고문헌	28
<부 록 1> 공공정보 이용약관 예시	30
<부 록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1

《 요 약 》

-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Open API나 링크드 데이터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기존과 다른 방법의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은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인격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 콘텐츠를 공공정보 활용 및 확산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해당 콘텐츠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음.
 - 특히,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 콘텐츠의 서비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 학술 콘텐츠에 대한 원시 데이터의 객체화, 분석 및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기획하는 시점에,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법적 쟁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서론

(1) 공공정보 개념

-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부처에 따라 공공정보, 공공데이터, 공공저작물, 공공저작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2010)에 의하면,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수집·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함.
 - 즉,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수집·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한 정보 뿐 아니라, 외부 위탁을 통해 생산하거나 기증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도 이에 포함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서는 공공저작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로 정의하였음.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에서는 공공저작권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으로 정의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위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만 있으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공공저작권이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 안전행안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함(제2조 2항).
- 해외에서는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측면에서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PSI)와 공공 콘텐츠(Public Sector Contents: PSC)를 구별하고 있음.
 - OECD에서는 공공정보(PSI)에 대해 공공부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창출되거나, 역동적·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상업적 이용이 용이한 것으로 정의함.

- 반면, 공공 콘텐츠(PSC)는 공공기관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문화, 유물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정적으로 보유하는 예술품이나 문화품 등을 의미함.
- 즉, 공공정보(PSI)는 질적으로 매우 원시적인 자료나 데이터의 의미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며, 공공 콘텐츠(PSC)는 정보보다는 질적으로 상위의 개념인 지식의 표현물이나 저작물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 본 보고서에서 의미하는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및 비저작물을 포함한 개념임.

- 단순한 원시 데이터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데이터의 객체화 및 분석 등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로써 콘텐츠를 의미함.
- OECD에서는 공공 콘텐츠(PSC)를 대부분의 상업적 활용이 제한되는 콘텐츠로 구분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민간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의미함.

□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 콘텐츠를 공공정보 활용 및 확산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해당 콘텐츠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음.

- 특히,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 콘텐츠의 서비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2) 공공정보 가치

□ 공공정보는 방대하고 광범위하며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 국가자산으로, 공무원 활용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높은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EC 부위원장인 Neelie Kroes는 ‘더 많은, 더 좋은 공공정보의 활용은 국민에게 더 많은 가치와 선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였음.

- 영국 공정거래청(Office of Trading)은 공공정보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10억 파운드 규모로 산출하였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연간 약 10조원을 추정하 바 있음(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6)

□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은 국가 행정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민주성으로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Tim Berners-Lee는 Public data 공개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정부 데이터의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기능을 더욱 효율화하는 것이라 표현한 바 있음.
- 예컨대, 서울시 지출 현황 앱은 투명성을 제고하며, 원기날씨 앱은 기상청의 업무를 더욱 효율화함과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그림 1〉 서울시 지출 현황 앱 및 원기날씨 앱 화면 예시



□ 공공정보를 콘텐츠 개발의 원천소재로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것에 기인함.
- 공공정보의 활용 수요는 2007년 39.4%에서 2010년 5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

〈표 1〉 공공정보 민간 활용 수요 비교(2009-2010)

※ 출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

구분	2009	2010	증가율
활용수요	45.0%	51.6%	6.6%
활용현황	20.6%	28.6%	8.0%

-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Open API와 매쉬업(Mash up)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비용이 절감되었음.
 - 공공정보의 재활용(Re-use)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제공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업무의 부담을 덜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은 다양하고 고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민간 사업자는 자본없이도 창의성을 발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산업진흥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됨(최진원, 2012).

(3) 공공정보 개방 동향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200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각각 “data.gov”, “data.gov.uk”, “data.australia.gov.au”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저작물을 공개하고 있음.
 - 2010년 Open Government 데이터 캠프에 25개국에 참여하였으나, 이듬해 2011년에는 41개국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3 G8 정상회담 성명서에는 오픈데이터 추진이 명기되었으며, G8이 국가별 오픈데이터 행동계획을 2013년 말까지 수립하고, 2014 G8 Summit에서 진척 현황을 검토하기로 함.
 - 해외 각국의 공공정보 제공 및 재이용 정책 추진현황은 <표 2> 참조.

〈표 2〉 해외 각국의 공공정보 제공 및 재이용 정책 추진현황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국 가	주요 내용
뉴질랜드	- 공공정보 재이용 촉진을 위한 라이선스 해결을 위해 공공정보의 개방된 접근과 라이선스를 위한 프레임워크(NZGOAL) 런칭
프랑스	- 전기정보산업협회(GFII) 등은 포럼 등을 통해 공공정보 재이용 촉진활동 추진 - APIE(Agency for Public Intangibles of France)는 데이터 포털 계획조정, 접근성과 가격, 라이선스나 공공정보 이슈 관련 정책 등을 개발 - 공공 출판 및 정보위원회(COEPIA) 설립(2010.1)
핀란드	- 공간정보(INSPIR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 Directive 2007/2/EC 기반 구현 - 데이터 카탈로그 프로젝트 진행과 혁신적인 앱 콘테스트 등을 포함한 공공정보 재이용 이니셔티브 추진 - 열린 정부 데이터 가이드북(Public data-an introduction to opening the information resources) 발표
스웨덴	-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위한 윈스톱 슝 'InfoTorg' 포털 운영 - 공공정보 기반의 직접적인 마케팅 서비스(20개 이상의 재판매자가 재이용)
스페인	- 공공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공공정보법(공공정보 재이용법 37/2007)' 제정 - 공공정보 재이용의 잠재성을 보여주기 위한 'Aporta' 프로젝트 런칭
체코	- 공공정보 포털 'EPMA' 런칭(2007.6)
독일	- 공공정보 재이용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정보자유(FOI)법 등) - 영국이나 미국과 유사한 공공정보 제공 포털(data.gov.de) 구축
네덜란드	- 정부 데이터와 정보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OWMS) 발표
노르웨이	- 공공정보(정부 데이터셋 등) 라이선싱 모델 협의(블로그, data.norge.no)
아일랜드	- 공공정보 재이용 지원을 위한 'www.PSI.gov.ie' 포털 운영

□ 공공정보의 요청과 활용이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DB서비스 기업 454개 중, 서비스를 위한 DB 구축 시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1년을 기준으로 약 159개(3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DB서비스 매출의 약 21.1%가 공공정보의 활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됨.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활용이 약 28%로 가장 많으며, 지역정보 8.6%, 입찰정보 5.8%, 날씨 5.8%, 법률 5.8%의 순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의료, 특허, 공시자료, 부동산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1).

- 최근에는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Open API로도 제공하고 있는 추세임.
 - 매쉬업 이전에는 기존 시스템의 통합중심으로 정보접근 환경을 보여주었다면, 매쉬업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들을 유지하면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음(이혜원, 윤소영, 2011).
 -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매쉬업 서비스는 구글 맵을 이용한 서비스로, 그 외에도 검색, 사진 공유, 쇼핑 정보 제공,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키워드로 하는 정부 3.0을 정부의 운영방향으로 삼고 있음.
 -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의미함.
 - 공공정보의 개방은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행정 참여,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음.

〈그림 2〉 박근혜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비전과 전략

※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2. 공공정보 개방 관련 국내외 법제도

(1) EU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지침

- EU는 1989년 “정보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너지 효과 제고 지침(Guideline for Improving the Synerg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Information Market)”을 발표함.
 - 공공부문에서 생산·수집한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도모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후 1996년 유럽정보산업협회(EIA)가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의 상업적 접근권한을 위한 지침안(A Draft Directive for a Commercial Right of Access to Public Sector Database)”을 제시하였음.
 - 1998년 유럽위원회는 “공공부문정보, 유럽의 핵심정보자원(Public Sector Information: A Key Resource for Europe)”이라는 “공공정보에 대한 녹색”(Green Paper on Public Sector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 공공정보의 개념과 종류, 접근 조건, 제공 비용, 저작권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음.

- EU는 2003년 11월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제정함.
 - 이로써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정보를 재활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 지침은 회원국간 국경을 초월한 정보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업무처리, 거절시 사유 통지 등 제공 절차와 수수료 등 비용과 관련된 과금 기준, 비차별적 독점 계약의 금지 원칙, 공공정보 목록 공개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음.

- EU 회원국들은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정비할 의무를 지니며,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지침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국가로 언급되고 있음.

- 2005년 6월 영국은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 2005)”을 제정하였음.
- 프랑스도 “행정과 국민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 조치 및 행정·사회·재정적 성질의 제 규정에 관한 법률” 중 제1편 제2장에서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대해 규정함.
- 독일은 2006년 12월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음.

□ 특히 영국은 EU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지침을 국내법화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관한 자문과 규제를 전담하기 위해 공공정보실(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PSI)를 설립함.

- OPSI는 정보관리를 주도하는 국가기록원과, 접근권 및 사생활보호를 주관하는 법무부의 보완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일반 공중, 정보산업, 정부와 정보의 발견·활용·공유 및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그 밖의 공공부문에 대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독립기관인 OPSI는 공공정보 재활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독려하기 위한 최고의 실무체제를 제공하며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2) 미국의 공공정보 공개 관련 법제도

□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제정하여,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일반인이 접근하여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동법은 1996년 전자적 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E-FOIA)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포함하도록 한 것임.
- 이 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정부기관은 국가안보, 무역기밀, 범죄집행 조사과일, 개인정보 등 9가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인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함.
- 또한 국민들의 용이한 신청을 위해 전자적 방법이나 형태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복사 요청에 응하기 위함

여 복사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한편, 문서감축법(Paperwork Reproduction Act: PRA), 정부문서감소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GPEA) 등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정보의 이용·재배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함.
 - 특히 GPEA는 단순히 정부 내 문서를 줄이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음.
 - 예컨대 민간에서의 상업적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게 전자포맷, 전자 파일, 전자 서명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회람(Circular) A-130에서도 공공정보의 개방과 제공, 재활용을 위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음.
 - 정부정보는 공공에게 정부, 사회, 경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정부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정부 운영을 관리하며, 시장에서는 하나의 상품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정보 재활용의 취지를 언급하고 있음.
 - 공공정보 제공의 원칙으로 모든 공공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배포, 무조건적 무제한적 제공,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이상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개방하고 있음.
 - 2009년 정부기관 전체 차원의 연방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데이터의 실효적 재생산을 위해 “data.gov”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 data.gov를 통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원천데이터(raw data), 활용 데이터(tool data), 지리정보(geo data)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 정부의 노력은 정부의 투명성 제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8년 워싱턴 D.C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 “Apps for Democracy” 콘테스트에서 자전거 도로 및 주차공간을 안내 해 주는 앱, 범죄정보, 빌딩 개방시간 안내 앱 등 47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출품되었는데, 이들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23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됨(Federal News, 2011).

(3)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2010년 3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부처적인 수준에서 공공정보의 민간제공 및 활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한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공공정보 민간활용촉진 종합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제공의 원칙과 절차가 부재하는 점을 들어 2010년 4월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 부처의견 수렴을 거쳐 7월에 공포하였음.
 - 공공정보 제공지침은 공공정보의 제공확대 계획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정보 활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당해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공정보 제공 근거, 제공 원칙, 제공 범위, 제공 대상, 제공 절차, 제공 방법, 감독 등 공공정보 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공공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관리, 공공정보 관리체계, 정책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주된 골자임.
 - 그러나 법이 아닌 지침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강제적인 집행력에 제약이 있음.

〈표 3〉 공공정보 제공지침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조문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제2장 제공대상 공공정보와 제공 대상자 (제5조~제7조)	제공대상 공공정보 공공정보 제공대상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제3장 공공정보 제공의 신청 및 처리 (제8조~제11조)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지원센터의 공공정보 제공신청 처리 공공정보 제공신청의 처리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처리
제4장 공공정보 제공방법 및 비용부담 (제12조~제14조)	공공정보 제공방법 비용부담 제공 중단 등의 조치

- 한편,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민간제공과, 이용보장을 위한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의 법률적 근거 및 일관된 제공기준과 절차, 방법 등이 명시됨.
 - 동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의 범국가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 제공의 대상을 ‘공공정보’나 ‘공공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정보’는 개별단위이면서 추상적인 개념이고, ‘공공데이터베이스’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공공 간 공유·활용되는 단위를 의미하며,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함.

- 이 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제1조).
- 특히, “제공”을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 이는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는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정, 추출, 변환하는 등의 가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수정, 변환, 추출할 수 있는 기계 판독(Machine-readable)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로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함(제18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가 법률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현안이 되고 있음.
 -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인지의 여부를 실무자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적 판단과 책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함.

3. 공공정보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 우리나라도 공공정보를 개방하겠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정치권에 서도 기치를 내걸었으나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애는 법적인 부담으로 판단됨.
 -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은 공공정보 제공·활용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 특히 현행법은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 최적화된 상태라 하기 어려움.
 -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일반 조항의 도입으로 문제 해결의 활로를 마련하였으나, 고아저작물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이영록, 최진원 2010).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함.

- 본 보고서에서는 KISTI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 콘텐츠를 공공정보 활용 및 확산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해당 콘텐츠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서비스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함.
 - 원시 데이터 뿐 아니라 원시 데이터의 객체화, 분석, 재조합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포괄함.
 - 특히, 실무 현장에서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검색 서비스와 저작권법

- 공공기관이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생성한 정보라 할지라도 “저작물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허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저작물성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 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즉, 공공정보라 하더라도 저작물성이 있는 정보라면 공유 및 개방에 있어서 저작권 처리가 문제될 여지가 큼.

- KISTI에서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을 비롯한 학술 콘텐츠의 검색 서비스는 일반적인 검색 도구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은 없다고 여겨짐.
 - 예컨대,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논문의 국문명, 외국명, 저자명, 저널의 국문명, 외국명, 출판연도, 키워드, 초록, 본문 등을 제시해 줌.
 - 이러한 검색 서비스는 과거에는 복제권, 전시권 등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조항 등을 근거로 법원은 대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음.

- 우리나라 저작권은 한-EU, 한-미 FTA를 반영하는 2012년 개정에서 공정이용 일반 조항과 Information tool에 대한 OSP safe harbor 조항이 정비되어, 검색 서비스 제공 자체에 대한 법적인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임.
 - 다만, 크롤링에 대한 ebay 사건, 썸네일에 대한 Perfect10 사건 등에서는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음.

(2) 저자정보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법

- 한편, 현행법에서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는 법은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함(제2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 및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의미함(제2조).

- 학술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저자정보에는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 활동분야, 저자의 대표 키워드 등이 제공될 수 있음.
 - 해당 정보는 출판된 학술 콘텐츠로부터 추출, 재가공되어 생성된 가치가 부가된 콘텐츠라 할 수 있음.

〈그림 3〉 저자정보 서비스의 화면 예시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author information.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HOME, 검색서비스, 분석서비스, and LOD서비스. On the left, a sidebar menu includes: 분석서비스 개요, 저자정보 (highlighted), 논문정보, 분석정보, and 공동저자.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arch bar with a '검색'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 '님의 상세 정보' (Your Detailed Information) section is displayed. It includ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동일분야 저자보기] [Linked Data]	
이름	[Redacted]
저자번호	ADPER0000148647
소속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활동분야	문헌정보학, ...
대표키워드	콘텐츠 공유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형태나 context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논리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이용에 대한 예외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법원은 IMEI 사건, 휴대번호 4자리 사건 등에서 개인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한 판시를 잇달아 내리고 있음.
 - 결합가능한 다른 정보는 동일인의 보유일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업적 제휴관계, 정보시스템의 연결관계 등이 존재하여 접근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전웅준, 2012).
-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 3>의 저자정보 서비스는 이름과 더불어 소속 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김기창, 2012) 넓은 의미에서 “고용정보” 등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표 4〉 개인정보의 예시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 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 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 그러나 저자정보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로 보임.

- 물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공정이용 조항 등의 예외적 허용 조항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개인과 관계된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가 되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비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고, 사회적 소통의 수단으로서 그 공개성이 전제되어 있는 연락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정준현, 2012).

□ 또한 저자정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저자 스스로가 공표한 정보이므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큼.

-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서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물DB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 당초 공개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전제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있음.
-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에만 이용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음.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의 개인정보는 학술연구와 자문, 저술활동, 기고 등에 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정보주체가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행정안전부, 2011).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의 취지와 용도, context를 고려하여 위법성이 제한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저자정보 서비스는 저자의 학술정보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재조합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저자의 상세식별은 물론, 출판이나 공동 연구 등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자정보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3) 로그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

- 로그파일과 쿠키정보도 특정인으로 식별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됨.

- EU는 2009년 개정된 ePrivacy Directive에서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쿠키정보를 저장하거나 수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법해석상 온라인 추적차단 기능(Do-Not-Track)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온라인 광고를 위해서는 쿠키정보 등을 수집·이용할 수 밖에 없으나, 개정 ePrivacy Directive는 전자통신서비스 이용자 또는 가입자의 단말기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이용자 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제5조(3)).
 - 또한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로그데이터나 쿠키정보를 저장하거나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함.
 - 다만,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KISTI의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NDSL.kr)에서도 로그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약관을 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음.

- 요컨대, 로그 데이터 관련하여 사전에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나, 현행 서비스 사이트에서 약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음.

〈그림 4〉 NDSL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KISTI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KISTI의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며 선택항목의 입력여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은 없습니다.

① 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 : 회망 ID, 비밀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동전화번호, 이메일주소(뉴스레터 수신여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① KISTI는 이벤트, 설문조사 등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해 회원가입을 통하여 수집된 이메일과 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이벤트,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사은품 제공 및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③ 회원가입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지 않는 한 영구히 보유되며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이벤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다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등 사전에 보유목적, 기간 및 보유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 KISTI는 열람 및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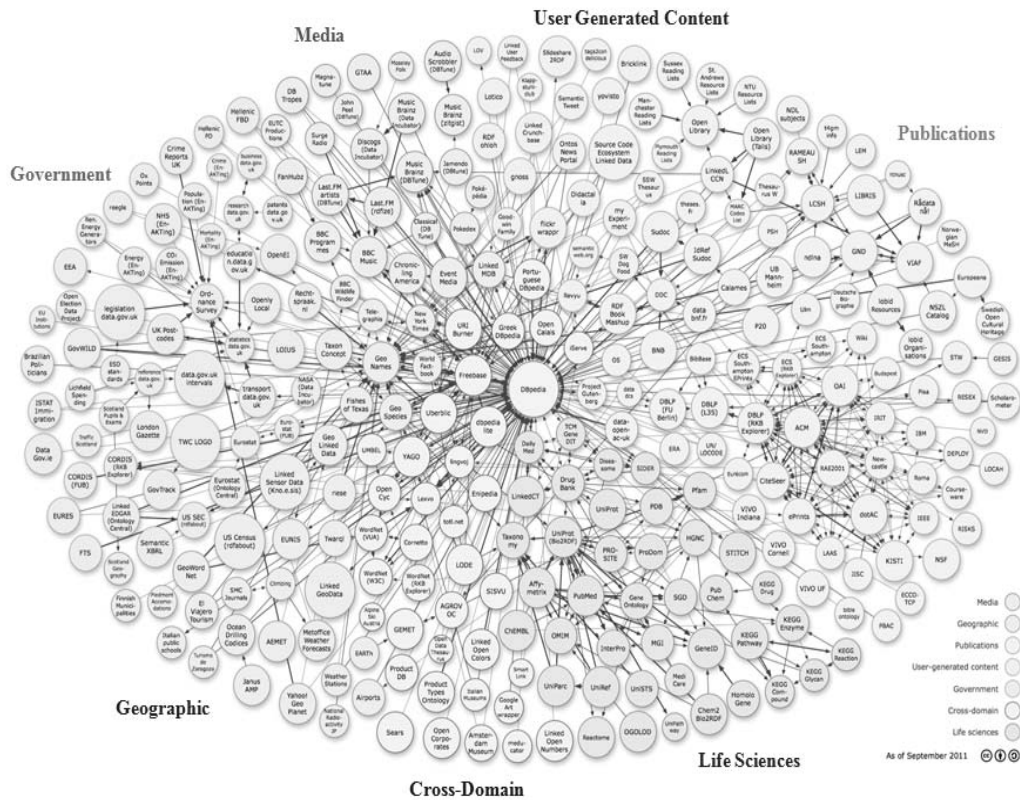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합니다.

(4) LOD 관련 법적 쟁점

- LOD는 웹상에 공개되어 특별한 제약없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변환 및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님.
- LOD(Linked Open Data)는 웹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개별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로 식별하고, 각 URI에 링크 정보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웹을 지향하는 모형을 의미함.
 - LOD는 URI를 통한 데이터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URI를 서로 링크하여 데이터 매쉬업 및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공개 및 시맨틱 매쉬업 등과 함께 관심을 끌고 있음.
 - LOD Cloud에는 300억개 이상의 트리플의 LOD가 존재함.

〈그림 5〉 LOD Cloud Diagram (2011)

※ 출처 : Linked Data. <http://linkeddata.org/>



□ LOD 서비스는 주로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미국 정부는 data.gov 사이트를 통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한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영국의 data.gov.uk도 마찬가지로 3,000개 이상의 링크드 데이터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있음.
- 덴마크의 Danish Bibliographic Centre는 덴마크 국가 서지 2010-2011에 수록된 장서가 담긴 텍스트파일을 LOD 형태로 oss.dbc.dk에 제공하였음.
- New York Times는 150년 이상의 색인어, 주제명표목을 정리한 index를 링크드 데이터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2009년 “Topic”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으며, 2010년 10,000개 이상의 주제명표목을 제공함.

□ 국내에서는 서울시의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문화시설, 문화재를 중심으로 LOD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6>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데이터셋

※ 출처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Dataset Home > Dataset

TOTAL 1207건. 1/121 Page 리스트형 테이블형 등록일자 조회수 서비스유형

서비스	등록일자	조회수	서비스유형
1.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강좌 [설명]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강좌와 정보입니다. 교육신청은 http://seocho...	2013.11.06	141	분류 문화관광
2. 한강공원 자연학습장 공간정보(좌표계: WGS1984) [설명]한강공원 자연학습장의 공간정보입니다.	2013.11.01	629	분류 문화관광
3. 한강공원 자연학습장 공간정보(좌표계: ITRF2000) [설명]한강공원 자연학습장의 공간정보입니다.	2013.11.01	98	분류 문화관광
4. 한강공원 공원안내소 공간정보(좌표계: WGS1984) [설명]한강공원 공원안내소의 공간정보입니다.	2013.11.01	73	분류 문화관광
5. 한강공원 공원안내소 공간정보(좌표계: ITRF2000) [설명]한강공원 공원안내소의 공간정보입니다.	2013.11.01	64	분류 문화관광
6. 한강공원 자전거보관소 공간정보(좌표계: WGS1984) [설명]한강공원 자전거보관소의 공간정보입니다.	2013.11.01	140	분류 문화관광
7. 한강공원 자전거보관소 공간정보(좌표계: ITRF2000) [설명]한강공원 자전거보관소의 공간정보입니다.	2013.11.01	61	분류 문화관광
8.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소 공간정보(좌표계: WGS1984) [설명]한강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간정보입니다.	2013.11.01	94	분류 문화관광
9.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소 공간정보(좌표계: ITRF2000) [설명]한강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간정보입니다.	2013.11.01	64	분류 문화관광
10. 한강공원 주차장 공간정보(좌표계: WGS1984) [설명]한강공원 주차장의 공간정보입니다.	2013.11.01	82	분류 문화관광

결과내 검색

◀ 1 2 3 4 5 6 7 8 9 10 ▶

<그림 7>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Linked Data Beta 서비스

※ 출처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Linked Data Beta 서비스

Linked data Beta 서비스 소개 | 시맨틱 질의&검색 | 시맨틱 관계 탐색 | 최신 네비게이션

RefFinder Status: Idle

between examples

(1)
 (2)

Filter by: relations: (10/10)
 length class link conn...

number of objects	num	vi
1	0/0	
3	2/2	

물류정보도(물류정보도) -> geo -> qrcode -> No-1538-37.52023... -> qrcode.jpg?width=2... -> PhysicalThing -> National-museum-of-... -> Treasure -> 11-Seoul-teukbyeol... -> www.cha.go.kr -> 11030-Yongsan-gu -> No-B -> Thing -> GeoCoordinates -> 서울

- LOD 서비스가 검색방식이 아닌 데이터셋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함.
 - 데이터셋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저작권법인 쟁점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식별 가능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용자 입장에서는 학술 콘텐츠를 검색 방식이 아닌 데이터셋 제공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수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KISTI에서 수집, 가공, 관리하는 과학기술 콘텐츠를 데이터셋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포털 사이트처럼 크롤링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 방식이 바뀌는 것 뿐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
 - 개별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서버에 복제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주체는 KISTI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한편, LOD 서비스와 개인정보의 관계에 대하여, 제공 당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후 제3자의 행동이 추가되면서 다른 정보와 연계되어 개인의 식별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함.
 - 정보의 결합 및 분석으로 개인이 식별되고,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한 효과가 미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가는 점은 현행 법제도가 미처 예상하는 못하였던 부분임(최경진, 2013).

- 특히 결합과 분석에 의한 재식별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문제될 여지가 존재함.
 - 기존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소위 프로파일링(profiling)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까지 고민해야 함.

- 해외에서는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임.
 - EU는 과거 강제력이 없던 E-Privacy 지침을 통하여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율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최근 EU 일반정보보호규정(안)이나 ICDPPC 우루과이 선언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A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에서 목적 제한적 수집(focused collection) 원칙에 따라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기업들은 수집된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실히 폐기하거나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명시적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다만 “비식별화 처리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 식별 요소와 결합하여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는 제공(공유)받는 자가 기 보유하고 있거나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함” 등이 기술되어 있음.
 - 해당 해설서의 재식별 가능성이 낮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예시)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의 적절한 이용 통제를 위한 접근 제한과 같은 절차를 도입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절차와 수단을 도입하라고 제시함.
 - 다만, 이러한 지침은 공유와 개방을 통한 공공정보의 빅데이터로서의 활용 취지를 그다지 고려하지 못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는 수집할 때 뿐 아니라, 이용·제공의 경우에도 최소처리 원칙에 따라 특정한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이용, 제공하여야 할 것임.
 - 수집·제공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통해 데이터가 결합·분석되면서 개인이 식별되고, 특정인에게 불리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의 범위를 식별 가능성을 전제로 정의하고, 수집단계에서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요건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꾀하고 있으므로, 수집에 대한 통제만 통과한다면, 개인정보의 활용은 용이한 편으로 판단됨.

-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뿐더러,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수집에 대한 통제에 집중되어 있고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OD로 제공 형태가 전환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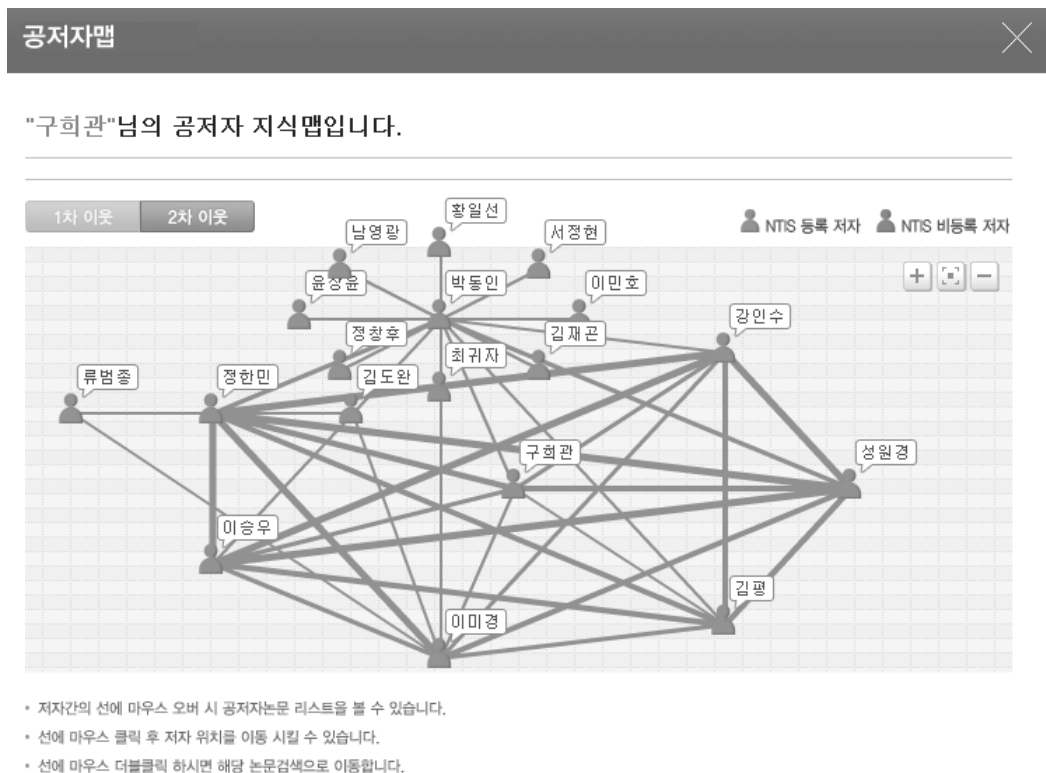
(5) 공저자맵과 인격권

□ KISTI에서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사이트에서는 공저자 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저자맵은 NDSL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 콘텐츠에 기반하여 공저(共著)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는 저자의 학문적 성향은 물론 연구자간 친밀도에 대한 추정이 가능함.

〈그림 8〉 NDSL 공저자맵 서비스

※ 출처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http://www.ndsl.kr/>



- 공저자맵과 유사한 로마켓의 “인맥지수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으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음(로마켓 사건).
 - 로마켓은 우리나라 모든 법조인들의 개인신상정보와 사건수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종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포털로, 2005년 12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변호사 7000여명의 최근 10년간 사건수임내역을 분석해 승패율, 전문분야 등을 제공하는 “변호사전문성지수”와 인맥관계를 제공하는 “인맥지수서비스”를 시작함.
 - 대법원 판결로는 법조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조인 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인맥지수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나, 변호사의 승소율과 전문성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이 남.

- 공저자맵 역시 공저자 관계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므로 인맥지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로마켓 판시 사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인맥정보로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로마켓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단순히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 간 개인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배점비율을 달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주관적인 방법으로 재가공하여 수치화하였음.
 - 개인간의 친밀도는 지극히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타인이 알 수 없는 것인데, 로마켓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임에도 마치 실제 법조인 간의 객관적 친밀도를 표현한 것처럼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함.
 - 또한 재판부는 인맥지수 서비스는 법조인 간의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도 그러한 인식 하에서 접근할 것이므로 인맥지수 서비스가 통용된다면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공저자맵 서비스는 단순히 공개된 사실 그대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로마켓 사건의 인맥지수 사례를 근거로 공저자맵이 위법하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음.

4. 결론

- 최근 저작권과 개인정보가 ICT의 양대 장애물로 지목되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서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이 이러한 기술을 고려하여 제·개정된 것이 아니며, 저작권과 개인정보 모두 과보호가 우려되는 시점임은 명백함.

-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 개인정보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거했다고 하여 그것으로 개인의 식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또한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을 알 수 없게 하였다 해도, 나머지 정보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이창범, 2013).

-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의 최소화, 비식별화 등의 보호조치 등 현행 법과 관련 지침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법제도와 해석론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걱정하게 된다면 서비스 가능 범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이용자는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게 됨.

- 이에 ICT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 기관에서는 라이선스나 개인정보, 면책·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약관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예컨대, 현행 NDSL 약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3자 활용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약관을 통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인한 활용자의 불만과 반대로, 제3자의 불법적 활용으로 인한 서비스 기관의 손해에 대비하여, 면책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약관 개정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 정책 : 저작권 관련 정책은 CC BY 수준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약관을 통해 이용허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개인정보 관련 정책 : 정보서비스 기관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제3자가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별도의 고지없이도 금지되는 행위이나, 이를 고지하고 위법적인 방식으로 활용시에는 제공을 중단하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음.
- 면책 및 손해배상 관련 정책 : 제3자의 활용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의 품질 등으로 인한 면책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스마트정부의 공공정보 개방과 이용활성화 전략. 「CIO 리포트」, 통권 28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https://www.data.go.kr/#/L3B1YnMvcG90L0lyb3NJbnRyb1N2YzEkQF5tNjE=>
- 김기창. 2012.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정보법학」, 16(3): 151-173.
- 문화체육관광부. 201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및 활용계획.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1915
- 이영록, 최진원. 2010.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창범. 2013.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법학논집」, 37(1): 519-570.
- 이혜원, 윤소영. 2011. 매쉬업을 적용한 기관 내 정보검색시스템 통합방안 연구 - 국사편찬위원회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42(1): 63-83.
- 전응준. 2012.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위치정보서비스의 법적 쟁점 - 개인위치 정보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관점에서. 서울: 한국정보법학회.
- 정준현, 2012, 개인정보의 이전형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과 한계에 관한 검토,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36(1).
- 최경진. 2013.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25(3).
- 최진원, 2012.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16(1): 237-266.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6.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및 과급효과 연구.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 2010년도 국내DB산업 시장 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1. 2011년도 국내데이터베이스 산업 시장분석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Gov 2.0 시대의 공공정보 및 공공서비스 활성화 전략. 「CIO 리포트」, 통권 21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12.

Federal News. With e-gov fund cuts, will citizen-developed apps discontinue?
2011. 5. 10.

<http://www.federalnewsradio.com/?nid=60&sid=2376072>

Linked Data. <http://linkeddata.org/>

〈부 록 1〉 공공정보 이용약관 예시

(활용 조건 및 금지 사항)

- ① 활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과 제공기관이 제시한 이용허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 ③ 정보를 왜곡하거나 출처를 오인케 하는 행위, 활용자가 제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④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는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제공 기관의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정보의 제공 및 중단)

- ① 제공기관은 본 약관에 동의한 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②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4조의 활용 조건 및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등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공 기관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③ 제공기관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면책)

- ① 제공기관은 활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제공기관이 제시한 이용허락조건·공지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② 제공기관은 정보에 포함된 오류, 누락 등 정보의 품질 또는 정보의 활용·활용불능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제공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정보와 관련된 진술, 보증, 의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제공기관은 공공정보의 계속적 제공 또는 추가되는 공공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 ⑤ 제공기관은 활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만일 활용자와 분쟁 중인 제3자가 제공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활용자는 제공기관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손해배상 및 관할)

- ① 활용자의 귀책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공 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정보 제공 중단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부 록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56호, 2013.7.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관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1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활용지원센터가 아닌 기관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그 밖에 활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서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종합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분쟁의 조정)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 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3조(조정거부 및 중지)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조정절차 등)

-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35조(비용부담)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면책)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

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제37조(자료의 제출 요청)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용지원 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과태료)

-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956호, 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 또는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제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저 자 ▶

유 수 현	· KISTI NDSL서비스실 선임연구원 · yoosu@kisti.re.kr
김 완 종	· KISTI NDSL서비스실 선임연구원 · wjkim@kisti.re.kr
김 혜 선	· KISTI NDSL서비스실 선임연구원 · hskim@kisti.re.kr
최 진 원	·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 · studylaw@studylaw.biz

KISTI 지식리포트 제37호

학술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인 쇄 2013년 12월 5일

발 행 2013년 12월 6일

퍼낸곳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퍼낸이 박영서

편집인 김혜선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화 02-3299-6114

등 록 1991. 2. 12, 제5-258호

ISBN 978-89-294-0419-2 93360

인쇄처 승림디앤씨

※ 본 연구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참여 연구원들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 KISTI 지식리포트 발행 목록

호	서명	저자	발간일
1	학술지 수집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현황 분석	이재윤, 김혜선, 이혜진	2009.06.11
2	국내 과학기술지식의 글로벌 확산 전략	서태설, 최현규	2009.09.04
3	국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KISTI의 전략적 정보자원 개발방안	황혜경, 최호남, 윤희운	2009.09.21
4	학술논문 오픈 액세스를 위한 공공접근정책 방향	서태설, 허 선, 노경란	2009.10.23
5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이상환, 심원식	2009.11.10
6	E.infrastructure기반 국가 R&D 정보서비스의 지능화 방안	송인석, 오세홍	2009.12.04
7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서비스(KSCI)의 현황 및 발전 전략	최선희, 이재운	2010.01.29
8	학술정보센터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 오픈 액세스 출판	노경란, 이혜진	2010.02.11
9	과학기술정보의 아카이빙 체제 구축	황혜경, 이선희, 최호남, 서혜란	2010.02.16
10	세계 주요 과학기술 정보기관의 최근 동향	이상환, 노경란, 김혜선, 황혜경, 정은경	2010.03.02
11	과학기술 정보자료 보존관리 : 현황분석 및 미래예측	이선희, 황혜경, 류범중, 윤희운, 김석영	2010.06.30
12	리포지터리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이상기, 정영미	2010.10.07
13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쟁점 분석	유수현	2010.10.07
14	이공계 대학 교수의 과학기술정보 이용 현황	김환민, 김재훈	2010.12.02
15	계량서지적 분석용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방안	최선희, 김희정, 이재운	2011.01.24
16	2010년도 한국 과학자의 SCI 논문 계량분석	김원중, 노경란, 박민수, 최현규	2011.04.06
17	국내 과학기술정보 이용실태 조사 분석	박민수, 이상환, 최현규, 정정수	2011.04.08
18	국내 과학기술정보 이용자 니즈 및 형태 연구	박민수, 이상환, 최현규, 정정수	2011.04.08
19	학술지 유통환경 변화와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	서태설, 김규환, 최현규	2011.06.07
20	우리나라 SCI급 논문의 영향력 분석 : NCR for Korea 1981-2010을 기준으로	김원중, 노경란, 최현규, 박민수	2011.08.17
21	연구자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	노경란, 최현규	2011.10.19
22	연구자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가이드	노경란, 최현규	2011.10.19
23	서비스 사이언스 기반 과학기술 콘텐츠 서비스 방안	김지영, 신기정, 황혜경, 조부연	2011.10.26
24	효율적 연구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노경란, 유수현, 최현규	2011.11.09
25	SEO(검색엔진최적화)를 통한 검색순위 올리기 전략	현미환, 이태석, 문영수, 권정혁	2011.11.11
26	연구자 협업지원형 정보서비스 사례연구	이혜진, 현미환, 김혜선, 박민수, 최현규	2011.12.01
27	과학기술 R&D 라이프사이클 연구 : 생명공학 및 나노분야를 중심으로	김혜선, 권나현, 정은경, 이정연, 최현규	2011.11.30
28	웹사이트의 사용성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	현미환, 박민수, 이태석, 최현규	2011.12.05
29	국내 과학기술 연구자의 소셜 미디어 활용 현황	현미환, 이혜진, 김혜선, 박민수, 최현규	2011.12.08
30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학술정보 활용지표 개발	이혜진, 유수현, 김혜선, 이재운	2012.01.31
31	FTA와 개정 저작권법이 정보유통에 미치는 영향	유수현, 이대희	2012.02.21
32	고품질 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컴퓨팅자원 인프라 구축	정영임, 신용주, 한성근, 김재훈, 김정환, 최호남	2012.03.30
33	모바일 앱(App) 개발을 위한 특화 기술 분석	현미환, 신수미, 김혜선	2012.08.10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문제공서비스 현황 분석	이선희, 김지영, 문영수, 신기정	2012.12.31
35	정보서비스 공공기관 검색엔진 활용 만족도 조사	이태석, 신수미, 유수현, 정용일, 이은정	2013.07.31
36	국내의 오픈액세스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이은지, 현미환, 김원중, 김혜선	2013.11.29